##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57

발의연월일: 2024. 6. 28.

발 의 자:김용민·박지원·주철현

임오경 • 한준호 • 민형배

문진석 · 장경태 · 이기헌

전용기 · 김남희 · 임미애

황운하 · 김한규 의원

(14위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경제적, 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 확충과 개선 그리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과 보건, 처우개선을 위한 시설에 행정적·재정적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이륜자동차(오토바이)의 배달시장이 활성화되며 이륜자 동차 운행량 증가에 따른 소음 및 오염물질 과다 배출이 국민 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고 있음. 그에 따라 배달서비스 이륜자동차를 친환경차 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있는 실정임.

이에 배달서비스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이용할 경우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부문의 온실 가스 감축을 줄이려는 것임(안 제23조제5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3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이륜자동차의 구매, 이용 및 교체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3조(행정적・재정적 지원 등)	제23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)		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			
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			
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			
행정적 • 재정적 지원을 할 수			
있다.		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5의2.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		
	업에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		
	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		
	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		
	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		
	이륜자동차의 구매, 이용 및		
	교체		
6. (생략)	6. (현행과 같음)		